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2007. 12. 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의 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 7. 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2. 그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5조의 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그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 4. 6.]

제6조 삭제 <2017. 12. 26.>

제6조의 2 삭제 <2017. 12. 26.>

제6조의 3 삭제 <2017. 12. 26.>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09. 8. 6., 2013. 1. 22.>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료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 외품류

바.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 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 11. 26.>



## 포장과 법률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삭제 <2015. 11. 26.>

마. 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4. 6.]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다음 호에 계속>